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70
----------	------

제출년월일 : 2008년 7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 1. 제안이유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2008. 5. 9. 시달됨에 따라
- 현행 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도록 한 것을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 버스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 붙임

- 붙임 1. 의안전문 1 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 부  
3. 관계법령 1 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 부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생략)</p> <p>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p> <p>2. (생략)</p>	<p>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p> <p>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2005. 1. 5. 개정)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 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 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 (n - 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 ( 2 ≤ n ≤ 12 )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4호]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8 - 715 호

「제천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6. 5.

제 천 시 장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2008. 5. 9. 시달됨에 따라
- 현행 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도록 한 것을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 버스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6월 25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세무부과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561, FAX 641 - 5579 담당자 : 권오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지방행정주 사	세무부과팀장				
권오상	06/27 이문영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 입법예고안을 공고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예고 조례 :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2008-715호
3. 공고기간 : 2008. 6. 5. - 6. 26.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 입법예고 란
5. 공고내용 : 불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113 명
  - 의견제시자 : 없음

불임 공고안 1 부 끝